

제410회 임시회
'23. 7. 13.(목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상정 의원 등 7명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3년 7월 3일
- 회부일자 : 2023년 7월 6일

3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에게 지역사회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,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고려인 주민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포상과 명예도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강제로 러시아 및 구 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*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소외된 외국 동포로 인식되어 왔음.

*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농업이민, 항일독립운동,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(약칭: 고려인동포법 제2조)

- 「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이 제정되어 있으나, 고려인은 생계와 자녀 양육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. 이에 본 조례를 통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에게 지역사회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,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것으로,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됨.
- 안 제2조는 “고려인 주민”의 용어 정의에 관한 것으로, 고려인 주민을 「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

따른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, 법령과 조화롭게 용어 정의를 하였다고 판단됨.

-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것으로, 도지사가 수행해야 하는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
- 안 제5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것으로, 「출입국관리법」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절한 대상이라 사료됨.
- 안 제6조는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, 도지사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타당함.
- 안 제7조는 안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안 제9조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,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, 안 제10조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, 고려인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-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, 고려인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, 고려인 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, 고려인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함.